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702
----------	-----

제출년월일 : 2009. 6.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구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안 제17조~제22조)

3. 근거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정조례안 : 붙임

###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9. 5. 25 ~ 6. 14)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항
6.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한 단체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사항
4.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 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70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5(목)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9. 7. 2(목)

라. 위원회 심사 : 2009. 7. 13(월)

마. 위원회 재심사 : 2009. 9. 17(목)

###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구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안 제17조~제22조)

#### 4. 근거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성낙팔)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주차요금, 자전거 보관대, 정비소, 대여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구민 참여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같은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자와,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는 설치자가 하고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있음

- 구청장이 자전거 보관대, 정비소, 대여소 등을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비용을 보

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설의 이용요금과 운영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은 울산광역시 및 남구를 비롯하여 전국 80여개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적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도 자전거이용 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 수정사유

- ▶ 제6조 중 제2항, 제3항의 내용은 제1항에 명시한 내용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함

#### ○ 수정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b>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한 단체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p>	<p><b>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b> 구청장은-----</p> <p>-----</p> <p>-----</p> <p>-----</p> <p>-----</p> <p>&lt;삭 제&gt;</p> <p>&lt;삭 제&gt;</p>